

의안번호	제 2020 - 29호
보 고 연 월 일	2020. 10. 23. (제10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36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
1. 개관	2
2. 관련 법률	3
3. 양형자료조사 결과	5
4.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결과	11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13
III. 환경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21
1. 개관	21
2. 전제 사항	22
3. 관련 법률 및 조문별 선고 건수	23
4. 양형자료조사 결과	51
5.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54
6.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71
IV. 향후 일정	79

【별첨】

- 최승원,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최승원,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최성국, 유관모,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검토(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I. 제13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0. 10. 12.(월) 15:30 ~ 18:3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1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형일, 최성국,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강수진, 범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방안
- 「환경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방안

II.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의의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 개인의 생활이나 업무의 근거가 되는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

나. 특징

- 주거침입범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일이 많고, 주된 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임
 - 예외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1항) 등과 같이 주거침입죄와 다른 범죄가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함
-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권고하는 실익이 있음
 -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고,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고하지 않음
 -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죄 사이의 처리기준에 따라 상향된 형량범위 상한까지 권고할 수 있음

다. 보호법익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주거의 자유라는 특수한 성질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고,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 다만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는 '사생활의 자유 및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함

2. 관련 법률

가. 형법(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 319	①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3년 ↓ 징역 또는 500만 원 ↓ 벌금	기본적 구성요건
	②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		
§ 320	특수(제319조 각 죄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함	5년 ↓ 징역	가중적 구성요건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3년 ↓ 징역	독립적 구성요건
§ 322	(제319조 내지 제321조 각 죄명)미수	제319조 내지 제321조의 각 미수		미수범 처벌

나. 특별법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¹⁾	§ 2② 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함(공동주거침입)	4년 6월 ↓ 징역 또는 750만 원 ↓ 벌금
폭력행위처벌법	§ 2③ 1호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7년 ↓ 징역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누범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34 1호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형법 제320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누범특수주거침입)	1년 ↑ 12년 ↓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¹⁾	§ 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불응(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1년 ↓ 징역 또는 1,000만 원 ↓ 벌금

-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폭력행위처벌법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³⁾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⁴⁾을 함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됨
 - 상습주거침입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흉기휴대주거침입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흉기휴대주거침입 등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3항)이 각 삭제됨
 - 공동주거침입 등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주거침입 및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누범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이 정비됨
- 한편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에 특수상해(제258

1)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2)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3)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

조의2),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 특수공갈(제350조의2)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상습범 관련 조항은 신설되지 않음. 결국 주거침입 범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3. 양형자료조사 결과

가. 대상사건의 분포

- 2015. 1. 1.~2019. 12. 31. 제1심 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죄, 징역형 선고 총 529건(사건 수는 피고인 수 기준)

단위: 명, %

세부죄명	수	비율
건조물수색	4	0.8
건조물침입	65	12.3
건조물퇴거불응	2	0.4
방실수색	1	0.2
방실침입	17	3.2
자동차수색	5	0.9
저택침입미수	1	0.2
주거침입	317	59.9
주거침입미수	1	0.2
퇴거불응	27	5.1
특수건조물침입	13	2.5
특수주거침입	33	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8	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10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5	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10	1.9
합계	529	100.0

-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보다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다만 법률 개정애 따라 양형자료조사 대상 범죄 중 양형기준의 설정에서 제외되는 죄명이 있음
 - 구 폭력행위처벌법 중 상습주거침입 규정(제2조 제1항) 삭제 ☞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 없음
 - 구 폭력행위처벌법 중 (상습)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규정(제3조 제1항, 3항) 삭제 ☞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

나. 선고 내역 및 형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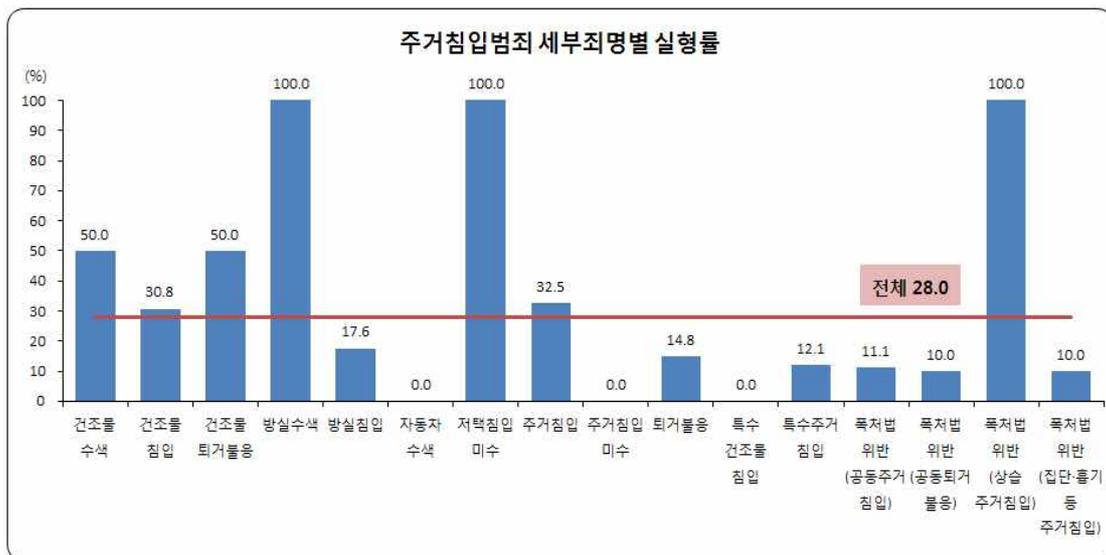
(1) 선고 내역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건조물수색	수	2	2	4
	비율	50.0	50.0	100.0
건조물침입	수	20	45	65
	비율	30.8	69.2	100.0
건조물퇴거불응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방실수색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방실침입	수	3	14	17
	비율	17.6	82.4	100.0
자동차수색	수	0	5	5
	비율	0.0	100.0	100.0
저택침입미수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주거침입	수	103	214	317
	비율	32.5	67.5	100.0
주거침입미수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단위: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퇴거불응	수	4	23	27
	비율	14.8	85.2	100.0
특수건조물침입	수	0	13	13
	비율	0.0	100.0	100.0
특수주거침입	수	4	29	33
	비율	12.1	87.9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수	2	16	18
	비율	11.1	88.9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퇴거불응)	수	1	9	10
	비율	10.0	90.0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주거침입)	수	5	0	5
	비율	100.0	0.0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흥기등주거침입)	수	1	9	10
	비율	10.0	90.0	100.0
전체	수	148	381	529
	비율	28.0	72.0	100.0



(2) 징역형의 형량 분포

(가) 전체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건조물수색	수	-	-	2	2	-	-	-	-	-	-	-	-	-	-	4	3.50
	비율	-	-	50.0	50.0	-	-	-	-	-	-	-	-	-	-	100.0	
건조물침입	수	-	1	2	27	3	18	7	2	4	-	-	1	-	-	65	5.83
	비율	-	1.5	3.1	41.5	4.6	27.7	10.8	3.1	6.2	-	-	1.5	-	-	100.0	
건조물퇴거불응	수	-	1	-	-	-	1	-	-	-	-	-	-	-	-	2	4.00
	비율	-	50.0	-	-	-	50.0	-	-	-	-	-	-	-	-	100.0	
방실수색	수	-	1	-	-	-	-	-	-	-	-	-	-	-	-	1	2.00
	비율	-	100.0	-	-	-	-	-	-	-	-	-	-	-	-	100.0	
방실침입	수	-	-	-	7	-	8	1	-	-	-	-	-	1	-	17	6.00
	비율	-	-	-	41.2	-	47.1	5.9	-	-	-	-	-	5.9	-	100.0	
자동차수색	수	-	2	-	2	-	1	-	-	-	-	-	-	-	-	5	3.60
	비율	-	40.0	-	40.0	-	20.0	-	-	-	-	-	-	-	-	100.0	
저택침입미수	수	-	-	-	-	-	-	-	-	1	-	-	-	-	-	1	12.00
	비율	-	-	-	-	-	-	-	-	100.0	-	-	-	-	-	100.0	
주거침입	수	1	3	7	89	6	125	47	16	16	-	1	1	5	-	317	6.35
	비율	0.3	0.9	2.2	28.1	1.9	39.4	14.8	5.0	5.0	-	0.3	0.3	1.6	-	100.0	
주거침입미수	수	-	-	-	-	-	-	1	-	-	-	-	-	-	-	1	8.00
	비율	-	-	-	-	-	-	100.0	-	-	-	-	-	-	-	100.0	
퇴거불응	수	-	1	1	17	1	6	-	-	1	-	-	-	-	-	27	4.67
	비율	-	3.7	3.7	63.0	3.7	22.2	-	-	3.7	-	-	-	-	-	100.0	
특수건조물침입	수	-	-	-	2	-	8	3	-	-	-	-	-	-	-	13	6.15
	비율	-	-	-	15.4	-	61.5	23.1	-	-	-	-	-	-	-	100.0	
특수주거침입	수	-	-	-	8	-	13	7	2	2	-	-	-	1	-	33	6.91
	비율	-	-	-	24.2	-	39.4	21.2	6.1	6.1	-	-	-	3.0	-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수	-	-	-	10	-	5	3	-	-	-	-	-	-	-	18	5.22
	비율	-	-	-	55.6	-	27.8	16.7	-	-	-	-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퇴거 불응)	수	-	-	-	6	-	4	-	-	-	-	-	-	-	-	10	4.80
	비율	-	-	-	60.0	-	40.0	-	-	-	-	-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상습주거 침입)	수	-	-	-	-	-	-	1	1	1	1	-	-	-	1	5	13.60
	비율	-	-	-	-	-	-	20.0	20.0	20.0	20.0	-	-	-	20.0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흥기 등주거침입)	수	-	-	1	-	-	4	-	2	3	-	-	-	-	-	10	8.30
	비율	-	-	10.0	-	-	40.0	-	20.0	30.0	-	-	-	-	-	100.0	
전체	수	1	9	13	170	10	193	70	23	28	1	1	2	7	1	529	6.21
	비율	0.2	1.7	2.5	32.1	1.9	36.5	13.2	4.3	5.3	0.2	0.2	0.4	1.3	0.2	100.0	

(나) 실행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건조물수색	수	-	-	-	2	-	-	-	-	-	-	-	-	-	-	2	4.00
	비율	-	-	-	100.0	-	-	-	-	-	-	-	-	-	-	100.0	
건조물침입	수	-	1	-	6	1	5	1	2	3	-	-	1	-	-	20	7.05
	비율	-	5.0	-	30.0	5.0	25.0	5.0	10.0	15.0	-	-	5.0	-	-	100.0	
건조물퇴거불응	수	-	-	-	-	-	1	-	-	-	-	-	-	-	-	1	6.00
	비율	-	-	-	-	-	100.0	-	-	-	-	-	-	-	-	100.0	
방실수색	수	-	1	-	-	-	-	-	-	-	-	-	-	-	-	1	2.00
	비율	-	100.0	-	-	-	-	-	-	-	-	-	-	-	-	100.0	
방실침입	수	-	-	-	-	-	2	1	-	-	-	-	-	-	-	3	6.67
	비율	-	-	-	-	-	66.7	33.3	-	-	-	-	-	-	-	100.0	
저택침입미수	수	-	-	-	-	-	-	-	-	1	-	-	-	-	-	1	12.00
	비율	-	-	-	-	-	-	-	-	100.0	-	-	-	-	-	100.0	
주거침입	수	1	3	3	17	2	36	19	7	8	-	1	1	5	-	103	7.27
	비율	1.0	2.9	2.9	16.5	1.9	35.0	18.4	6.8	7.8	-	1.0	1.0	4.9	-	100.0	
퇴거불응	수	-	1	-	2	-	1	-	-	-	-	-	-	-	-	4	4.00
	비율	-	25.0	-	50.0	-	25.0	-	-	-	-	-	-	-	-	100.0	
특수주거침입	수	-	-	-	1	-	1	-	-	2	-	-	-	-	-	4	8.50
	비율	-	-	-	25.0	-	25.0	-	-	50.0	-	-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수	-	-	-	1	-	-	1	-	-	-	-	-	-	-	2	6.00
	비율	-	-	-	50.0	-	-	50.0	-	-	-	-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공동퇴거불응)	수	-	-	-	1	-	-	-	-	-	-	-	-	-	-	1	4.00
	비율	-	-	-	100.0	-	-	-	-	-	-	-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상습주거침입)	수	-	-	-	-	-	-	1	1	1	1	-	-	-	1	5	13.60
	비율	-	-	-	-	-	-	20.0	20.0	20.0	20.0	-	-	-	20.0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주거침입)	수	-	-	-	-	-	-	-	-	1	-	-	-	-	-	1	12.00
	비율	-	-	-	-	-	-	-	-	100.0	-	-	-	-	-	100.0	
전체	수	1	6	3	30	3	46	23	10	16	1	1	2	5	1	148	7.32
	비율	0.7	4.1	2.0	20.3	2.0	31.1	15.5	6.8	10.8	0.7	0.7	1.4	3.4	0.7	100.0	

(다) 집행유예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건조물수색	수	-	2	-	-	-	-	-	-	-	2	3.00
	비율	-	100.0	-	-	-	-	-	-	-	100.0	
건조물침입	수	-	2	21	2	13	6	-	1	-	45	5.29
	비율	-	4.4	46.7	4.4	28.9	13.3	-	2.2	-	100.0	
건조물퇴거불응	수	1	-	-	-	-	-	-	-	-	1	2.00
	비율	100.0	-	-	-	-	-	-	-	-	100.0	
방실침입	수	-	-	7	-	6	-	-	-	1	14	5.86
	비율	-	-	50.0	-	42.9	-	-	-	7.1	100.0	
자동차수색	수	2	-	2	-	1	-	-	-	-	5	3.60
	비율	40.0	-	40.0	-	20.0	-	-	-	-	100.0	
주거침입	수	-	4	72	4	89	28	9	8	-	214	5.91
	비율	-	1.9	33.6	1.9	41.6	13.1	4.2	3.7	-	100.0	
주거침입미수	수	-	-	-	-	-	1	-	-	-	1	8.00
	비율	-	-	-	-	-	100.0	-	-	-	100.0	
퇴거불응	수	-	1	15	1	5	-	-	1	-	23	4.78
	비율	-	4.3	65.2	4.3	21.7	-	-	4.3	-	100.0	
특수건조물침입	수	-	-	2	-	8	3	-	-	-	13	6.15
	비율	-	-	15.4	-	61.5	23.1	-	-	-	100.0	
특수주거침입	수	-	-	7	-	12	7	2	-	1	29	6.69
	비율	-	-	24.1	-	41.4	24.1	6.9	-	3.4	100.0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수	-	-	9	-	5	2	-	-	-	16	5.13
	비율	-	-	56.3	-	31.3	12.5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공동퇴거불응)	수	-	-	5	-	4	-	-	-	-	9	4.89
	비율	-	-	55.6	-	44.4	-	-	-	-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주거침입)	수	-	1	-	-	4	-	2	2	-	9	7.89
	비율	-	11.1	-	-	44.4	-	22.2	22.2	-	100.0	
전체	수	3	10	140	7	147	47	13	12	2	381	5.77
	비율	0.8	2.6	36.7	1.8	38.6	12.3	3.4	3.1	0.5	100.0	

4.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1)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할 범죄

- ①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
- ②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③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퇴거불응
- ④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
- 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
- ⑥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

(2)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범죄

① 형법 제322조 미수범

- 살인범죄 외에 아직까지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음
- 다양한 미수범의 행위 태양 또는 범의 침해 정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 있음
- 기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양형 가능

②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주거침입죄와 행위태양은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보호법익이나 죄질에서 차이가 있음 ☞ 주거침입범죄군에 포함시키기 적절하지 않음
- 법정형이 낮고(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주거침입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대적으

로 높은 주거침입범죄로 기소될 것이므로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음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형법 제321조 (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실)수색

(1) 포함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
- 부부·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수색 범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서 예방 효과 도모
- 수색은 침입보다 기본권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크므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아야 함. 비록 법정형 중 징역형은 동일하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자가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2) 제외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

- 주거침입죄와 객체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어 형식상 같은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범죄는 '사생활의 자유 및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포함하고 있는 등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 등이 주거침입죄와 기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범죄에 해당함
☞ 주거침입범죄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발생빈도(5년간 징역형이 선택된 529건 중 10건, 1.9%)가 낮아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수색의 대상이 신체와 주거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추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일반론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사범죄의 유형 분류 사례

(가) 폭력범죄 양형기준

01¹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0월	4월 - 1년6월	6월 - 2년6월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02¹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특수중상해·누범상해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2년 - 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03¹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6	누범·특수폭행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04¹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누범·특수협박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나) 재물손괴 범죄 양형기준

01¹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02¹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03¹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공익건조물 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공익건조물 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다) 공갈 범죄 양형기준

01¹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2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02¹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특수공갈	6월 - 2년	10월 - 3년	2년 - 5년
2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10월 - 2년6월	1년4월 - 4년	3년 - 6년
3	누범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나. 구체적 유형 분류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1) 요약

-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구분하여 2개의 대유형을 들 것인지 여부
 - ① 다수 의견(8인)
 - 2개의 대유형을 두어 서로 다른 양형인자표 사용
 - ② 소수 의견(3인)
 - 하나의 대유형을 두어 통일된 양형인자표 사용
-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을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① 다수 의견(9인)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
 - ② 소수 의견(2인)
 -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2) 대유형 분류 방안

(가)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

-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에 법정형, 행위 태 양, 죄질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양형인자(예를 들어 동종 누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재물손괴범죄, 폭력범죄 중 상해죄의 경우에도 기본적 구성 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함
- 다만 향후 양형인자 검토 결과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의 양형인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대유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나) 하나의 대유형으로 통합(소수 의견, 3인)

- 주거침입범죄는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양형 편차도 크지 않으므로, 별도의 대유형 분류 없이 하나의 대유형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
-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공유하되,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특유한 양형인자는 양형인자표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3) 소유형 분류 방안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기본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동일하나, 행위 태양이나 죄질 및 양형 통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가중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사이의 차이보다는 가중적 양형요소의 존재로 인하여 불법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만약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등 수색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대유형 분류 방안에 대한 다수 의견의 경우 대유형 1. 일반적 기준에 소유형 3. 주거·신체수색을 추가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죄의 반영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됨

① 다수 의견(9인)

- 폭력 범죄, 손괴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의 예를 참고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일반 주거침입·퇴거불응의 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② 소수 의견(2인)

-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은 그 법정형의 상한이 형법상 주거침입·퇴거불응과 다르므로 다수 의견과 같이 가중인자로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함이 타당

▣ 다수 의견(8인)에 의한 유형 분류안

※ 형법 제321조도 포함할 경우 대유형1/소유형 3으로 반영

01¹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2	퇴거불응			

02¹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2	누범주거침입 등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소수 의견(3인)에 의한 유형 분류

※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동주거침입 등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1인)도 있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2	퇴거불응			
3	특수주거침입 등			
4	주거수색			
5	공동주거침입 등			
6	누범주거침입 등			
7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Ⅲ. 환경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개관

가. 의의

-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로서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의미
- 현행 법령상 환경범죄는 다수의 개별 환경관계법에 규정된 환경범죄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환경범죄단속법’으로 약칭)에 규정된 환경범죄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범죄단속법은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과실범),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누범의 가중),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10조(양벌규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나. 특징

- 환경침해행위는 ① 매개체인 환경재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가하고(침해의 간접성), ② 환경재의 특수성으로 한 번의 오염이 확산·전파되며(침해의 전파성), ③ 그 원인행위의 완만한 진행으로 피해의 발생과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운(침해의 완만성) 특징이 있음
- 침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장기간이거나 누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움
- 행위자가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을 가진 사안이 많은 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한 다수에게 미침

다. 보호법익

- ①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인간법익설)와 ②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재 또는 환경 그 자체나 환경인자, 예컨대 물, 토양 내지 대기를 독자적인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는 견해(환경재설)가 대립
 - 환경범죄단속법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태계 침해행위 자체도 처벌함으로써 두 견해를 절충한 '이중적 보호법익이론'에 입각
 - 반면 개별 환경관계법에 규정된 환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2. 전제 사항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200여개에 이르는 광의의 환경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의 실제 성격, 빈도 수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하수도법, ③ 대기환경보전법, ④ 소음·진동관리법, ⑤ 물환경보전법, ⑥ 해양환경관리법, ⑦ 폐기물관리법,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정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완료
- 전체회의 시 원자력 관련 법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범죄도 환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들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러나 운영지원단에 의하여 양형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곧바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주무 전문위원들 역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조사결과가 존재하는 8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검토하였음
- 해결 방안으로는 ① 현재까지 양형자료조사가 마쳐진 범죄 중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를 확정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한 후 추후 환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양형자료조사를 거쳐 설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②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확정을 유보하고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를 검토하는 방안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일단 전문위원단에서는 양형자료조사결과가 존재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설정 범위를 검토하고, 양형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3. 관련 법률 및 조문별 선고 건수

- 2015. 1. 1.~2019. 12. 31. 제1심 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죄, 징역형 선고인 양형조사대상 492건(사건 수는 피고인 수 기준)과 운영지원단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63건(양형자료조사 대상 아님) 등 합계 555건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48	1호 (32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 제1항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2호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3호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	
4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 제9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p style="text-align: center;"><제25조 제9항 제4호~제7호></p> <p>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5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 제5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6호 (3건)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49	1호 (6건)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2호 (35건)	
	3호	
	4호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3건)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호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호 (1건)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로서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7호 (1건)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			
	8호	재활용신고자로서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금지명령을 불이행			
	9호 (3건)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			
	10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1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			
	12호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 영위			
	§ 50	1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불이행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2건)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3호 (2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4호 (7건)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5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7건)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호 (9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호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로서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8호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	
9호 (2건)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10호	공공처리시설자등으로서 제25조 제10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불이행	
11호 (12건)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2호 (1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서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13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 영위	
14호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 대여	
15호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영위	
16호	제3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51	1호	제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	300만 원 ↓ 벌금
	2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호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4호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	
	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호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	
	7호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 미준수	
	8호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행위	
	9호	제37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호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으로서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나. 하수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75	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 제2항></p> <p>2.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2호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	
§ 76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 제2항></p> <p>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p>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1의 2호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2호 (1건)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3호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4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영위	
	5호 제45조 제7항·제51조 제3항·제52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 대여	
	6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영위	
	7호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영위	
	8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영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77	1호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	
	2의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2의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3호 제2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제해시설의 설치, 대체·철거 또는 수리 등)을 불이행	
	4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5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 위반	
	6호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9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div>	
	8호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9호 (1건)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10호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하는 행위		
11호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 개선명령 위반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호	제49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호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호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78	제4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200만 원 ↓ 벌금

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89	1호 (3건)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2호 (2건)	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3호 (7건)	제31조제 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1조 제1항></p> <p>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div>
	4호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
		7년 ↓ 징역 (1억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5호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	
5의 2호 (10건)	제38조에 따른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불이행	
6호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	
6의 2호	제46조 제4항을 위반(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여 자동차를 제작	
7호 (2건)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7의 2호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7의 3호	제55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8호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	
9호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10호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호	제74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2호 (1건)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13호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	
§ 90	1호 (40건)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2호 (1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3호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호	제32조 제3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2조 제3항></p> <p>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p> <p>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p> <p>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p> </div>	
	4의 2호	제38조의2 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불이행	
	4의 3호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미측정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의 4호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제39조 제2항></p> <p>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p> <p>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p> <p>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p> </div>	
	5호	제41조 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	
	6호	제44조 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불이행	
	7호	제51조 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을 위반	
	10호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	
	11호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	
§ 90의 2		제41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 91	1호	제30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호	제32조 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	
2의 2호	제3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	
2의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2의 4호	제32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	
2의 5호 (1건)	제41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합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	
3호	제43조 제4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	
3의 2호	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3의 3호	제44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3의 4호	제44조의2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3의 5호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	
4호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4의 2호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5호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요구	
6호	제68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7호	제6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8호	전문정비사업자로서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	
	9호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호	제74조 제5항에 따른 규제(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	
	11호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로서 제74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12호	제74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검사대행기관(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업무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12의 2호	자동차제작자로서 제7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12의 3호	제76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 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재사용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 영위	
	12의 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12의 5호	제76조의1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	
	13호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91의 2	1호	제58조 제12항에 따른 표지(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이는 행위	500만 원 ↓ 벌금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2호	제5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92	1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명령(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300만 원 ↓ 벌금
	2호	제32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	
	3호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	
	3의 2호	제38조의2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호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	
	4의 2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4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43조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	
	6호	제43조제 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호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8호	제44조 제5항에 따른 조치(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설치 등)를 하지 아니한 경우	
9호	제50조의2 제2항 및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		
10호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1호	제62조 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불이행	
	12호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호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호	제7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 93	제40조 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200만 원 ↓ 벌금	

라.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56	1호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위반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	
	3호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인증(제작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4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경우	
§ 57	1호 (2건)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3호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	
	4호	제23조 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5호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5의 2호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5의 3호	제34조의3 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금지명령)을 위반	
	5의 4호	제44조 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지명령)을 위반	
	6호	제44조 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경우	
§ 58	1호 (2건)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6개월 ↓ 징역 (500만 원 ↓ 벌금)
	4호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	
	5호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운행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6호	제38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	

마. 물환경보전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75	1호 (13건)	7년 ↓ 징역 (7,000만 원 ↓ 벌금)
	2호	
	3호	

<제38조 제2항>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

		<p>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p>	
§ 76	1호	제4조의6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불이행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32건)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호 (25건)	<p>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38조 제1항></p> <p>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4호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5호 (18건)	<p>제38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38조의3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호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	
7호 (1건)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	
8호 (5건)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9호	<p>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55조 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1조 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77 (3건)	1호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 영위	
§ 78	1호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등의 조치명령 위반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2호 (2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3호 (6건)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경우	
	5호	제15조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	
	6호	제17조 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	
	7호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명령을 위반	
	8호	제37조제 1항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	
	9호	제37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9의 2호	제38조의2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10호	제38조의4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	
	10의 2호	제38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	
	11호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	
	12호	제5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미설치	
	13호	제53조 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	
	13의 2호	제53조의3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	
13의 3호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		
14호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15호	제60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		

	17호	제68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79	1호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불이행	500만 원 ↓ 벌금
	2호	제62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호	제68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80	1호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미부착	100만 원 ↓ 벌금
	2호	제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바. 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26	1호 (1건)	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불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127	1호 (9건)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2건)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3호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해양오염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	
	4호	제6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	
	5호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	
§ 128	1호 (1건)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2호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3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4호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5호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6호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7호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유해방오시스템(유해방오도료를 사용한 설비 등)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하지 아니한 자
8호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호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
10호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 영위
11호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12호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미 실시
13호	제82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14호	제84조 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제85조 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
15호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
16호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16의 2호	제110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판매
17호	제11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17의 2호	제110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를 제작·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	
	18호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129 ①	1호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	
	2호 (1건)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출한 자는 제외한다)	
	3호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	
	4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	
	5호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	
	6호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	
	7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	
	8호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9호	제4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년 ↓ 징역 (1,000만 원 ↓ 벌금)
	10호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11호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		
12호	제8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		
13호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 129 ②	1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	1년 ↓ 징역 (500만 원 ↓ 벌금)

2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
3호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
4호	제2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
5호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
6호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
7호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게 한 경우
8호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
8의 2호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
9호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조치명령)을 불이행
9의 2호	제6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
10호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1호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을 위반
12호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사용
13호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제조하거나 수입
14호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
15호	제11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16호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사. 폐기물관리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63	1호 (66건)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경우	7년 ↓ 징역 (7,000만 원 ↓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可
	2호 (40건)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3호	제1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 64	1호 (24건)	제13조의3 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경우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3호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경우	
	4호 (1건)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	
	5호 (46건)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7호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	
	8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8의 2호	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경우	
	8의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9호	제31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불이행	
§ 65	1호 (15건)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제1호, 제6호, 제11호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可
	2호 (7건)	제13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호	제13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	
	4호 (3건)	제13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호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경우	
6호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8호	제17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경우	
9호	제17조의5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호 (4건)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호 (16건)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14호 (2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	
15호	제25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호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	
17호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	
18호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19호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19의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19의 3호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경우	
20호 (1건)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	
21호 (4건)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호에 따른 명령(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22호	제47조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22의 2호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을 불이행	

	23호 (14건)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24호	제50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	
	25호	제50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부적합 판정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불이행	
	26호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호	제50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6	1호 (12건)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1의 2호	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1의 3호	제13조의5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한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2호 (9건)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3의 2호	제14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미준수	
	3의 3호	제15조의2 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호 (1건)	제17조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4의 2호	제1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 3호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 4호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6호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	
7호	제25조 제7항의 조건(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붙인 필요한 조건)을 위반		

8호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9호 (13건)	제25조 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5조 제9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
9의 2호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
9의 3호	제25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9의 4호	제25조의2 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경우
10호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
11호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12호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12의 2호	제3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
12의 3호	제3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
12의 4호	제30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12의 5호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경우
13호 (1건)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4호	제31조 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이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명령을 미이행
17호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18호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호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62	1호 (1건)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 63	1호 (2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3년 ↓ 징역 (3,000만 원 ↓ 벌금)
	2호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2의2호 (1건)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3호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	
	4호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	
	5호 (3건)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6호	제25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	
	7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8호	제2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	
	9호	제36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	
	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1호 (2건)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 64	2호	제21조 제7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3호	제25조 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	
	4호	제27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4. 양형자료조사 결과

가. 대상사건의 분포

○ 2015. 1. 1.~2019. 12. 31. 제1심 단일범 또는 동종 경합범죄, 징역형 선고 총 529건(사건 수는 피고인 수 기준)

단위: 명, %

적용 법률		선고연도					전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수	16	23	15	26	8	88
	비율	18.2	26.1	17.0	29.5	9.1	100.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위반	수	0	0	1	2	3	6
	비율	0.0	0.0	16.7	33.3	50.0	10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	7	13	19	14	9	62
	비율	11.3	21.0	30.6	22.6	14.5	100.0
물환경보전법(구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수	11	17	22	13	9	72
	비율	15.3	23.6	30.6	18.1	12.5	100.0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수	0	0	0	4	0	4
	비율	0.0	0.0	0.0	100.0	0.0	100.0
폐기물관리법위반	수	19	50	43	54	78	244
	비율	7.8	20.5	17.6	22.1	32.0	100.0
하수도법위반	수	1	0	1	0	0	2
	비율	50.0	0.0	50.0	0.0	0.0	100.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	0	2	5	2	5	14
	비율	0.0	14.3	35.7	14.3	35.7	100.0
전체	수	54	105	106	115	112	492
	비율	11.0	21.3	21.5	23.4	22.8	100.0

나.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1) 선고내역

단위: 명, %

죄명	수	비율	실형		집행유예	
			수	비율	수	비율
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88	17.9	10	11.4	78	88.6
하수도법위반	2	0.4	2	100.0	0	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62	12.6	6	9.7	56	90.3
소음·진동관리법위반	4	0.8	0	0.0	4	100.0
물환경보전법위반	72	14.6	6	8.3	66	91.7

단위: 명, %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4	2.8	5	35.7	9	64.3
폐기물관리법위반	244	49.6	52	21.3	192	78.7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위반	6	1.2	2	33.3	44	66.7
합계	492	100.0	83	16.9	409	83.1

(2) 징역형의 형량분포

(가) 전체

단위: 명, %

적용법률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36
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	2	1	24	-	38	6	8	8	-	-	-	1	-	-	88
	비율	2.3	1.1	27.3	-	43.2	6.8	9.1	9.1	-	-	-	1.1	-	-	100.0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위반	수	-	-	-	-	4	-	1	-	-	-	-	1	-	-	6
	비율	-	-	-	-	66.7	-	16.7	-	-	-	-	16.7	-	-	10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	-	-	15	1	36	6	1	2	1	-	-	-	-	-	62
	비율	-	-	24.2	1.6	58.1	9.7	1.6	3.2	1.6	-	-	-	-	-	100.0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수	1	-	14	-	24	10	6	14	1	-	-	2	-	-	72
	비율	1.4	-	19.4	-	33.3	13.9	8.3	19.4	1.4	-	-	2.8	-	-	100.0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수	-	1	2	-	1	-	-	-	-	-	-	-	-	-	4
	비율	-	25.0	50.0	-	25.0	-	-	-	-	-	-	-	-	-	100.0
폐기물관리법위반	수	1	1	35	4	97	37	21	29	5	1	1	6	5	1	244
	비율	0.4	0.4	14.3	1.6	39.8	15.2	8.6	11.9	2.0	0.4	0.4	2.5	2.0	0.4	100.0
하수도법위반	수	-	-	1	-	1	-	-	-	-	-	-	-	-	-	2
	비율	-	-	50.0	-	50.0	-	-	-	-	-	-	-	-	-	100.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	-	-	3	-	6	1	1	2	1	-	-	-	-	-	14
	비율	-	-	21.4	-	42.9	7.1	7.1	14.3	7.1	-	-	-	-	-	100.0
전체	수	4	3	94	5	207	60	38	55	8	1	1	10	5	1	492
	비율	0.8	0.6	19.1	1.0	42.1	12.2	7.7	11.2	1.6	0.2	0.2	2.0	1.0	0.2	100.0

(나) 실형

단위: 명, %

적용법률		형량(월)													전체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36	
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	-	-	-	2	-	1	6	-	-	-	1	-	-	10
	비율	-	-	-	20.0	-	10.0	60.0	-	-	-	10.0	-	-	100.0

단위: 명, %

적용법률		형량(월)												전체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36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위반	수	-	-	-	1	-	-	-	-	-	-	1	-	-	2
	비율	-	-	-	50.0	-	-	-	-	-	-	50.0	-	-	10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	-	3	-	2	-	-	-	1	-	-	-	-	-	6
	비율	-	50.0	-	33.3	-	-	-	16.7	-	-	-	-	-	100.0
물환경보전법(구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	-	-	-	2	-	1	2	-	-	-	1	-	-	6
	비율	-	-	-	33.3	-	16.7	33.3	-	-	-	16.7	-	-	100.0
폐기물관리법위반	수	1	4	1	7	9	7	8	3	1	1	4	5	1	52
	비율	1.9	7.7	1.9	13.5	17.3	13.5	15.4	5.8	1.9	1.9	7.7	9.6	1.9	100.0
하수도법위반	수	-	1	-	1	-	-	-	-	-	-	-	-	-	2
	비율	-	50.0	-	50.0	-	-	-	-	-	-	-	-	-	100.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	-	1	-	-	1	1	1	1	-	-	-	-	-	5
	비율	-	20.0	-	-	20.0	20.0	20.0	20.0	-	-	-	-	-	100.0
전체	수	1	9	1	15	10	10	17	5	1	1	7	5	1	83
	비율	1.2	10.8	1.2	18.1	12.0	12.0	20.5	6.0	1.2	1.2	8.4	6.0	1.2	100.0

(다) 집행유예

단위: 명, %

적용법률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위반	수	2	1	24	-	36	6	7	2	-	-	78
	비율	2.6	1.3	30.8	-	46.2	7.7	9.0	2.6	-	-	100.0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위반	수	-	-	-	-	3	-	1	-	-	-	4
	비율	-	-	-	-	75.0	-	25.0	-	-	-	10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	-	-	12	1	34	6	1	2	-	-	56
	비율	-	-	21.4	1.8	60.7	10.7	1.8	3.6	-	-	100.0
물환경보전법(구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	1	-	14	-	22	10	5	12	1	1	66
	비율	1.5	-	21.2	-	33.3	15.2	7.6	18.2	1.5	1.5	100.0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수	-	1	2	-	1	-	-	-	-	-	4
	비율	-	25.0	50.0	-	25.0	-	-	-	-	-	100.0
폐기물관리법위반	수	-	1	31	3	90	28	14	21	2	2	192
	비율	-	0.5	16.1	1.6	46.9	14.6	7.3	10.9	1.0	1.0	100.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	-	-	2	-	6	-	-	1	-	-	9
	비율	-	-	22.2	-	66.7	-	-	11.1	-	-	100.0

단위: 명, %

적용법률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8	
전체	수	3	3	85	4	192	50	28	38	3	3	409
	비율	0.7	0.7	20.8	1.0	46.9	12.2	6.8	9.3	0.7	0.7	100.0

5.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가. 다수 의견(9인)

- 법정형, 범죄발생의 빈도 수, 행위 태양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범위를 정하는 방안

※ 검토의 기준

- 법정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 개별 환경관계법상 처벌 규정의 법정형(징역형)은 '7년 이하'가 가장 높은 수준임. 그 밖에 죄책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1년 이하' 등으로 구분되어 대체로 법정형이 높지 않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 낮음
 - 선거범죄를 제외한 기존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양형기준은 설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
- 실제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범죄발생의 빈도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
 - 개별 환경관계법에 처벌 규정이 다수 존재하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선고 사례가 존재함
 - 선고 사례가 없는 범죄는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선고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 범죄를 참조하여 객관적인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

○ **행위 태양 및 죄질 고려**

- 환경범죄는 대체로 ①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중간배출 등 직접적 환경침해행위, ②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설치·영업행위, ③ 기타 행정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분류됨
- 대체로 ①>②>③의 순으로 죄질과 법정형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시 ①과 ②는 포함하되 ③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통계5)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48조	1호 ⁶⁾	제11조 ⁷⁾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⁸⁾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 ⁹⁾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6호	제28조 제1항 ¹⁰⁾ 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49조	1호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6
	2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5
	4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3

5)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개별 범죄의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를 표시함. 이하 다른 범죄에서도 같음.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건수
	6호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로서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운영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용시설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	
	9호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	2
50조	1년 ↓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7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2
		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2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로서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	1

6) 색깔 표시 부분이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임. 이하 다른 범죄에서도 같음

7)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

(나) 검토

-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5년 이하
 -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8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2년 이하
 - <4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9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법정형 1년 이하
 - <50조 3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 <50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8)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앞의 '근거 법령' 부분 참조

10)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 ❖ <50조 5호> 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 <50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 <50조 9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 ❖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다음의 범 죄는 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2년 이하
 - ❖ 49조 6호, 7호, 9호
 - 법정형 1년 이하
 - ❖ 50조 2호, 12호
- 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 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2) 하수도법

(가)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76조	2호	2년 ↓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1
77조	9호	1년 ↓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1

(나) 검토 - 불포함

- 신고 사례가 부족한 점,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75조 위반 범 죄(5년 이하)에 대한 신고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제76조 제2호 범 죄는 전형적 환경범 죄로 보기 어려운

점, 제77조 제9호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로 낮은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3) 대기환경보전법

(가)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89조	7년 ↓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 ¹¹⁾ 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
		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 ²⁾ 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2
		제31조제 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31조 제1항>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7
		제38조 ¹³⁾ 에 따른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불이행	10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2
		제74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1
90조	5년 ↓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40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1
91	2의 5호 1년 ↓	제41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	1

11)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

(나) 검토

-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7년 이하
 -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89조 2호>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 <89조 3호>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 법정형 5년 이하
 -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90조 2호>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다음의 범주는 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7년 이하
 - 89조 7호, 12호(법정형 높으나 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89조 5의2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명령 불이행이므로 환경범죄로 보기 어려움)

- 법정형 1년 이하

■ 91조 2의5호

- 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4) 소음·진동관리법

(가)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57조	1호	1년 ↓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2
58조	1호	6월 ↓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	2

(나) 검토 - 불포함

- 선고 사례가 있는 두 범죄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로서 전형적인 환경범죄에 해당하기는 함
- 그러나 두 범죄 모두 선고 사례가 각각 2건으로 부족한 점,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56조 위반 범죄(3년 이하)에 대한 선고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6월 이하'로 낮아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5) 물환경보전법

(가)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75조	1호	7년 ↓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 ¹⁴⁾ 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13
76조	2호	5년 ↓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3
	3호		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 ¹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 ¹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5
	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¹⁶⁾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위반 범죄)	18
	7호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	1
	9호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따른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5
77조	1호	3년 ↓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3
78조	2호	1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2
	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경우	6

(나) 검토

- 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모두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14)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앞의 '근거 법령' 부분 참조

16) 앞의 '근거 법령' 부분 참조

- 법정형 7년 이하
 -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법정형 5년 이하
 - ❖ <76조 2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법정형 3년 이하
 - ❖ <77조 1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법정형 1년 이하
 - ❖ <78조 2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 <78조 3호> 분노·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 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래 범죄는 행정명령 위반에 불과하여 환경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 ❖ <76조 5호>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위반 범죄
 - ❖ <76조 7호> 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 위반
 - ❖ <76조 9호>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

(6) 해양환경관리법

(가)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건수
126조 1호	5년 ↓	22조 제1항 및 제2항 ¹⁷⁾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1
127조 1호 2호	3년 ↓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9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2
128조 1호	2년 ↓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1
129조 14호 2항	1년 ↓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	1

(나) 검토

-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5년 이하
 - <126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법정형 3년 이하
 - <127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127조 2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법정형 2년 이하
 - <128조 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다음의 범주는 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1년 이하
 - 129조 제2항 14호(법정형 및 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행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7) 폐기물관리법

(가) 통계

17)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18)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가 현행 법률 제64조 제5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해당 범죄가 포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신고 건수	
63조	1호	7년 ↓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경우	66
	2호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40
64조	4호	5년 ↓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	1
	5호 18)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60
65조	1호	3년 ↓	제13조 ¹⁹⁾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15
	11호 20)		제18조 제1항 ²¹⁾ 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23
	14호 22)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	5
	20호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	1
	21호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1호에 따른 명령(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4
	23호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부적정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18
66조	1호	2년 ↓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제65조 제1호의 경우는 제외)	12
	2호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9
	4호		제17조 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	1
	9호		제25조 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13호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

함되었다.

19)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나) 검토

-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다음의 범주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법정형 7년 이하
 -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 법정형 5년 이하
 -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
 - 법정형 3년 이하
 - <65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법정형 2년 이하
 -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다음의 범주는 선고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정형, 발생 빈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
 - 법정형 5년 이하
 - 64조 4호(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법정형 3년 이하
 - <65조 11호> 무허가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 등(행정명령 불이행 유형으로 제외)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가 현행 법률 제65조 제11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21)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2)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가 현행 법률 제65조 제14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가 현행 법률 제65조 제23호로 되었으며 위 통계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해당 범죄가 포함되었다.

- ❖ <65조 14호> 허가사항 무단변경(상동)
- ❖ <65조 20, 21, 23호> 각종 명령 불이행(상동)
- 법정형 2년 이하
- ❖ 66조 4호, 13호(발생 빈도 낮고 전형적 범죄 유형으로 보기 어려움)
- ❖ 66조 9호(선고 사례는 상당수 있으나 행정형벌 성격 강하고 범죄 유형 다양함)
- 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가) 통계

단위: 명, %

적용법조		법정형	구성요건	선고 건수
62조	1호	5년 ↓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1
63조	1호	3년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
	2의 2호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1
	5호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3
	11호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불이행	2

(나) 검토

- 선고 사례가 존재하는 범죄는 법정형, 발생 빈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모두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위반범죄의 유사한 범죄와 동일하게 양형기준을 설정
- 법정형 5년 이하
- ❖ <62조 1호>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
- 법정형 3년 이하

- <63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 선고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밖의 범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아래 범죄는 행정명령 위반에 불과하여 환경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 <63조 2의2호> 건설폐기물의 무단운반
 - <63조 5호> 재위탁 금지규정 위반
 - <63조 11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9) 기타 - 환경범죄단속법 등

(가) 환경범죄단속법위반범죄 - 불포함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 2항²⁴) 등이 적용된 사례는 찾기 어렵고,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제4조 제2항²⁵)이 적용된 사례가 일부 확인됨
- 위 가중처벌규정을 제외하고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양형기준만을 설정하는 것은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환경범죄단속법위반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

24)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5)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나) 기타 환경관계법위반범죄 - 불포함

- 앞서 검토한 개별 법령 이외에 다른 환경관계법령과 관련하여서는 양형기준 설정이 가능한 정도의 집적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앞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별 법령의 대상범죄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바람직

나. 소수 의견(2인)

- 주로 범죄발생의 빈도 수를 고려하여 설정 범위를 정하는 방안

※ 검토의 기준

- 법률 관련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조사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범죄발생의 빈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4개 법률(아래 진하게 표시된 법률)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단위: 명, %

적용 법률	수	비율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88	17.9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6	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62	12.6
물환경보전법(구,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72	14.6
소음·진동관리법위반	4	0.8
폐기물관리법위반	244	49.6
하수도법위반	2	0.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4	2.8
합계	492	100.0

- 4개 법률에 규정된 개별 범죄 관련 : 검찰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징역형(실형+집행유예)이 선택되어 선고된 건수가 10건 이상인 범죄를 추출

-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는 무허가 범죄로서 대표적인 범죄유형 중 하나인 점, 각 법률의 별칙규정상 위치,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범죄로서 입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 건수가 10건 미만이지만 **설정 범위에 포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다음의 행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그 밖의 행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2) 대기환경보전법

- 다음의 행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89조 5의2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그 밖의 행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3) 물환경보전법

- 다음의 행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76조 5호>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위반 범죄
- 그 밖의 행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4) 폐기물관리법

- 다음의 행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
 -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
 - <65조 11호> 무허가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 등
 - <65조 23호>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불이행
 -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66조 9호> 각종 준수사항 미준수
- 그 밖의 행위는 모두 설정 범위에서 제외

6.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다수 의견(9인)

- 대유형을 개별 환경관계법별로 분류하고, 소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안

■ 분류 기준

○ 대유형 분류

- 개별 환경관계법의 체계에 따라 ① 대기환경 범죄, ② 물환경 범죄, ③ 해양환경 범죄, ④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⑤ 가축분뇨 범죄로 분류
- 해양환경 범죄는 선고 건수가 많지 않고 물환경 범죄와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법정형, 세부 범죄 유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
- 반면 건설폐기물 범죄는 세부 범죄 유형이 폐기물 범죄와 거의 일치하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폐기물 범죄와 함께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

○ 소유형 분류

-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되는 세부 범죄 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 ⇨ 각 세부 범죄 유형 별로 선고 사례가 많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사이에 죄질, 행위 유형 등에 따라 유의미한 양형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찾기 어려움. 구성요건별로 유형을 분류하면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 소유형이 다수 존재하게 됨
- 각 소유형에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다수의 개별 범죄가 포함되기는 하나, 법정형, 양형통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상 이들을 하나의 소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적용법조별로 소유형을 분류하게 되면,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 소유형이 다수 존재하게 되고, 향후 설정 대상 범죄를 추가하게 되면 소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다수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안

01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89조 2호>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 <89조 3호>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90조 2호> 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02¹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분뇨 등 무단배출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 <76조 2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제3유형(법정형 3년 이하)
 - <77조 1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제4유형(법정형 1년 이하)
 - <78조 2호>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78조 3호> 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

03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 <126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제2유형(법정형 3년 이하)
 - <127조 1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 <127조 2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제3유형(법정형 2년 이하)
 - <128조 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

04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제1유형(법정형 7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 <같은 법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 제2유형(법정형 5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
 - <건설폐기물법 62조 1호> 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
- 제3유형(법정형 3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5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건설폐기물법 63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 제4유형(법정형 2년 이하)
 - <폐기물관리법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같은 법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05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1유형(법정형 5년 이하)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48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2유형(법정형 2년 이하)

<4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49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3유형(법정형 1년 이하)

<50조 3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50조 4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

<50조 5호> 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50조 6호>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

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50조 9호>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 수역 유입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나. 소수 의견(2인)

- 대유형을 개별 환경관계법별로 분류하고, 소유형은 적용법조별로 분류하는 방안

■ 분류 기준

○ 대유형 분류

- 개별 환경관계법의 체계와 발생 빈도순에 따라 ① 폐기물 범죄, ② 물환경 범죄, ③ 대기환경 범죄, ④ 가축분뇨 범죄로 분류

○ 소유형 분류

- 개별 법률의 구성요건별로, 즉 하나의 행위 유형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예를 들어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와 제76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와 같이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구성요건이 다른 이상 각각을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다수 의견과 같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칫 하나의 소유형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양형인자가 포함될 수 있고, 하나의 소유형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표시하는 데에도 어려움 예상됨
- 다만 향후 양형인자를 검토하여 양형인자가 공통되는 경우 여러 소유형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음

○ 소수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안

01. 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3	사업장폐기물 불법 위탁 처리			
4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5	기준 위반 폐기물 처리			
6	미신고·허위신고 폐기물 처리			
7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미준수			

- 제1유형
 - <63조 1호>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 <63조 2호>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소각
- 제2유형
 - <64조 5호> 무허가 폐기물처리
- 제3유형
 - <65조 11호> 무허가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 등
- 제4유형
 - <65조 23호>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 제5유형
 - <66조 1호>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 제6유형
 - <66조 2호> 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제7유형
 - <66조 9호> 각종 준수사항 미준수

02.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2	무단방류 등			
3	측정기기 비정상작동 등			

- 제1유형
 - <75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제2유형
 - <76조 3호>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
- 제3유형
 - <76조 5호>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위반 범죄

03.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2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위반			
3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제1유형
 - <89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제2유형
 - <89조 5의2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 제3유형
 - <90조 1호>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04.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등			
2	허가 배출시설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등			
3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 등			

- 제1유형
 - <48조 1호>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2유형
 - <49조 2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제3유형
 - <50조 11호> 재활용신고자의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IV. 향후 일정

- 일시 : 2020. 11. 16.(월) 15:30 ~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건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 공청회 결과 검토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검토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검토
 -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